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553
------	------

2020. 06. 1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5월 25일, 권수정의원 외 27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0.06.1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권수정 의원)

1. 주 문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중대재해가 유사형태로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화재사고로 사망했으며,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공사 중 화재로 40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나. 유사한 사고원인과 사고유형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
- 다.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은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기인한 산업재해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과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미비에 따른 것임.
- 라. 이에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명확히 하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3. 이송처 :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건의안의 개요

- 건의안은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임.

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

-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대형 산업재해 사고는 지속되고 있음.
- 2019년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0명(사고 사망자 수 : 855명, 질병 사망자 수 : 1,165명)¹⁾으로, 여전히 하루 6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20여년간 유지해오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1)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²⁾.

- 그러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아닌 하위 직급의 종사자에게 분산되어 있어 중대 재해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 어렵고,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노동자 사망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은 처벌수준이 미약하고, 벌금액도 기업 규모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형태는 원청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임³⁾.
- 실제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6,144건 중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35건 (0.57%)으로, 채 1%가 되지 않음⁴⁾.
- 그 결과 기업의 안전불감 문화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산업 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속도와 효율이 안전보다 중시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기업 스스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2)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노동자 사망사고의 경우 원청의 처벌수준 또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상향시켰음(2020.1.16. 시행).

4) 경향신문,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행은 1%도 안돼” (2019.10.1.)

기업을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안전관리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에 건의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위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형법」 등의 개별 법률에 중대재해 유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 추후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필요해 보임.
-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강은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020.6.11.).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553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권수정, 임종국, 김달호,
오한아, 한기영, 김화숙,
이병도, 봉양순, 김기덕,
이영실, 김인호, 김정태,
이호대, 채인묵, 이태성,
유 용, 김태호, 권영희,
김경우, 최 선, 채유미,
이상훈, 이광호, 전병주,
문장길, 홍성룡, 이준형,
장상기 의원
(28명)

1. 주 문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중대재해가 유사형태로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화재사고로 사망했으며,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공사 중 화재로 40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참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나. 유사한 사고원인과 사고유형이 되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상태임.

- 다. 중대재해의 반복적인 발생은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에 기인한 산업재해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과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미비에 따른 것임.
- 라. 이에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안전에 대한 의무와 처벌을 명확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 나. 기타사항 :

4. 이 송 처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4월 28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12년 전인 2008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너무도 유사한 사고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거대참사로 이어지는 산업재해를 오랜 세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서글프게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진입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외주업체 직원 김군(당시 19세)이 사망한지 4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앞선 2013년과 2015년, 김군과 같은 노선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열차사고로 외주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가 두건이나 발생했었음에도 김군이 구의역 승강장에서 마지막 작업을 한 그날까지 위험한 노동환경이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위험한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방관한 사용자와 정부가 또 한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후 ‘위험의 외주화’, 하청업체에 떠넘기기식 안전책임회피 등 고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요?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떨어짐, 끼임, 무너짐, 화재폭발, 중금속 중독 등의 사고성, 직업병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산재로 사망

한 노동자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처참합니다.

노동자들은 고귀한 목숨을 ‘운’에 맡기라는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 기업이윤, 효율성, 안전 불감증 등의 이유로 살인적인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책임 회피현상은 여전합니다. 효율성과 이윤만을 좇는 이와 같은 행태로 안전해야 할 노동현장이 사람목숨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가 중 경제순위 10위권을 기록하는 등 고도발전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1위인 산업안전 후진국입니다.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한 노동환경은 높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기업과 사용자의 계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대다수가 하청노동자라는 사실은 안전에 대한 책임 일체를 하청업체에게만 떠넘기는 현실의 민낯이자 방증이며, 산업재해의 책임을 원청에게 의무화 했을 때 비로소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8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에 결정된 처벌은 시공사에 내린 벌금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故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22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현실화 된 것은 전무합니다.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재로 위험해진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치는 무섭게도 치솟지만,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원인규명과 책임자 엄벌은 소극적이고 관대합니다.

기업과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중대재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현행 법적 규제 근거로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자에게 원천적인 안전책임을 물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입법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처벌이나 보상이 아닌 강력한 예방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2007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의 산업재해에 대한 영향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살인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하지 않고서는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입 2년 만에 산재사망률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강력한 예방을 목적으로 한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노동자 중 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주저 없이 강력한 국가권력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소명을 안고 출범하는 21대 국회는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며 기본이 지켜

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허망한 죽음 앞에 더 이상 고인의 명복만을 비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눈물로 작동하는 작업장이 아닌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해 궁극적으로 행동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산재 사망 1위 국가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2020. 5.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